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1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박정훈·김민전·김형동

이성권 • 고동진 • 배현진

박수민 · 최은석 · 김소희

구자근 · 강명구 · 김상욱

한지아 • 박충권 • 이상휘

최형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또한 처벌 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2017년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이유로 등록취소된 여론조사기관·단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 이는 여론조사기관이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해 새로이 여론조사 기관·단체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

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시킴으로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 커를 근절시키고자 함. 또한 위반한 행위자가 새로 설립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개정).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함(안 제96조제1항 개정).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 제출의무를 부과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08조제6항 개정).

또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조사표본의 무작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개정).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

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벌금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52조제2항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 내에는"을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한 경우

제96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로 한다.

제108조제6항 중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내 경선 등을 위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2조제2항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 (5) -----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 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 3.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 자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 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은 경우 <신 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 한 경우

⑥ (생략)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7 ① 누구든지 <u>선거에 관한 여론</u> <u>조사결과를</u> 왜곡하여 공표 또 는 보도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생 략)

⑥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 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 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 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 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 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 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 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 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⑦ ~ ⑭ (생 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선거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 (14) (현행과 같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죄) ① (생 략)
 -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